

'21년 외국인력 신청관련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2021. 03. 29(월),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

1. '21년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내용

※ 세부내용 '본회 지역본부 홈페이지(<http://cb.kbiz.or.kr>) > 공지사항'에서 확인 가능

구 분	현 행	개 정
□ 코로나19 방역관련 진단검사 명령 미이행 사업장 감점 신설	<신 설>	<u>1년간 10점 감점</u>
□ 중대위반 사업장(성희롱) 감점 강화	2년간 5점 감점	<u>2년간 10점 감점</u>
□ 우수기숙사 사업장 우대	2년간 2.5점 가점	<u>2년간 5점 가점</u>
□ 노동시간 단축 조기 시행 사업장 우대 (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)	<신 설>	<u>2점 가점</u>
- 5인~49인 '21.07.01. 이전 시행		
□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우대 (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)	<신 설>	<u>2점 가점</u>
- 5인~29인 '22.01.01. 이전 시행		

2. '21년 고용허가 신청관련 유의사항

□ ('21. 2. 1일부터 시행) 고용허가 신청 시 ①사업장 전경 ②근로자 담당 직무 업무 내용(장비가동 모습 등)의 시각자료(사진) 제출 필수

□ ('21. 7. 1일부터 시행(제조업))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강화 조치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시각자료(사진) 8종* 제출 필수

* ㉠기숙사 전경 ㉡침실 내부 ㉢화장실, 세면 및 목욕시설, ㉣냉·난방시설 ㉤소방시설 ㉦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㉧수납공간 ㉨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55조 내지 58조의2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

□ ('21. 7. 1일부터 시행(제조업)) 기숙사 시설표 상에 주거시설 형태를 '가설건축물(컨테이너, 조립식패널 등), 사업장건물, 기타'로 체크한 경우, '건축물대장' 또는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'* 제출 필수

* '건축물대장(용도:주거,기숙사 등)' /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(용도:주거시설(숙소))'

※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' 관련, 지자체 도시건축과에 문의

-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 시설 현장 점검 실시 후 충족 시 근로자 배정(점수제 발표 전까지 확인)